

의견서

- 시행일자: 2008. 9. .
- 발 신: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임성룡
- 수 신: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안명균
전화:031-469-9031, 팩스:031-469-9034
- 제 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7.2 국토해양부령 제32호)의 특별공급 조항

1. 문제점

-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제12호2(이하 ‘이 사건법조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을 위한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경기도 고시 제 2008-275호)이 발령
- 나. 전후사정으로 보아서는 김문수 도지사가 특정기업에 특혜분양할 소지가 있으나 법령을 도지사가 향후에 자의적으로 적용할 것을 예상하여 법적인 조치를 사전에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건의 성숙성면에서 어렵습니다.
- 다. 단지 이 사건법조문이 헌법상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에 나열된 17개 각호의 국민주택특혜분양사유와 비교할 때 이 사건법조문이 특히 평등권을 위배하는지를 국민주택 특별분양의 입법취지 등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라. 국가의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안정 및 소형주택의 우선공급이며 이에 따른 정책의 일환인 국민주택특별공급의 취지는 무주택자 가운데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일제 종군위안부, 장애인 등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에게 85㎡이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우리 사회의 약자들로서 이들에게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국

가적 의무가 있습니다.

마. 그런데 이 사건법조문을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라는 명목으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공급대상)를 보면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종사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과 행정구역이 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별표1(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 461개 업종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6개 업종)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주택특별공급의 취지인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무관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국토해양부가 우려한 문제 즉 자의적인 대상자선정 및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쟁점

가. 비록 예상은 되지만 향후 도지사가 자의적인 법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서 법률적으로는 인용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나. 그렇다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특별분양 사유 17개항목을 서로 비교하여 이 사건법조항이 입법취지 나아가 헌법상의 기본권 가운데 평등권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즉 평등권의 여러 원칙 가운데 하나인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차별금지)”이라고 볼 때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법규정에 사회에서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없는 자를 포함하는 입법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평등권침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평등권의 차별금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즉 기본권소지자를 차별취급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일반적인 원칙과 달리 다른 사람을 차별취급해서 나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 헌법소원의 청구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청구인적격이며 이는 헌법소원이 각하되는 주된 사유입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에 나오는 대상자들이 원고적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일반단체 등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 기타 다른 요건들은 서류를 제출할 때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반비용

공익소송임을 고려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최저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